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구 공공전세주택)을 개편하고, 전세보증사고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입주자 후속 지원을 위한 서비스연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전세주택을 개편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의3, 안 제15조, 안 제17조의3)

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의3)

다. 지자체 등에 입주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입주자에 대한 후속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 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전화 044-201-4479, 4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